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80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승원 · 박지원 · 김한규
문대림 · 박균택 · 김남근
김종민 · 임호선 · 강준현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0년 110.8%에서 2025년 125.8%로 증가하는 과밀수용 환경 속에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5년 1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 건수도 2025년 기준 763건(피소 인원 1,505명)에 달하나,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소송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정원 대비 자살 비율은 1.29%~3.85%로 경찰(1.60%~1.90%)과 소방(1.65%~3.15%)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교정공무원이 폐쇄공간에서의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 누적, 수용자의

자살·자해 현장에 노출 등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정신건강관리·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직원숙소 지원, 복지·체육시설 설치·운영, 퇴직 후 취업 지원 및 소송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
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는 경우 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의료 및 심리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 섬·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

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교정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소속되어 교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정행정업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교정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정공무원의 배우자

나. 교정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복지시설”이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정시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교정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라.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육시설”이란 교정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관리,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교정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정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정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의견청취 및 제2항의 자료요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제7조(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시기·주기, 진료의 대상·방법·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정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교정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교정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폐쇄공간 근무, 야간 또는 교대 근무, 그 밖에 위하여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폐쇄공간 근무에 따른 정신적 고립감, 불안감 또는 우울감

2. 야간 또는 교대 근무에 따른 수면장애, 신체 불균형
3. 수용자의 폭행, 협박, 자살, 자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적 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용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정공무원
2. 수용자의 자살, 자해 현장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정공무원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 심리 또는 의료기관에 해당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검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검사의 결과는 해당 교정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정신건강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리지원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정공무원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심리 프로그램
2. 수용자의 폭행·협박·자살·자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입은 교정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3. 교정공무원의 직무 소진 예방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②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숙소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 섬·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교정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교정공무원 가족의 수, 연고지와의 거리, 근무지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정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 중 교정행정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재직 중 업무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를 교정시설 또는 관련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 지원)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정시설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